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004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490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0048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현진, 전강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찬, 고민삼

변론종결 2022. 6. 16.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2020. 8. 20.자 7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2020. 9. 28.자 1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각 취소하고, 2020. 9. 29.자 15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33,614,3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3,61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철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6.경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20. 9. 7.경 산사태로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에 2008. 8. 19. 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9. 30. 정리해고로 퇴직하였다.
- 다. 피고는 2020. 8. 20. 이 사건 회사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7,000만 원(이하 ‘제1금원지급행위’라 한다), 2020. 9. 28. 같은 계좌에서 1억 원(이하 ‘제2금원지급행위’라 한다), 2020. 9. 29. 이 사건 회사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이하 ‘제3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제1 내지 3금원지급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 라. 이 사건 회사는 제1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20. 8.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마. 이 사건 회사는 2021. 3. 31. 폐업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3회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증여 또는 변제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은 것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 합계 303,614,33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회사는 2020. 10.경 매출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 134,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전액을 회수하였다.

2) 피고는 2020. 2.경부터 8.경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의 요청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주주가수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고, 피고가 D에게 주주가수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변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정상적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계 254,071,290원¹⁾ (= 70,000,000원 + 75,305,215원 + 63,732,940원 + 45,033,135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20. 8. 20.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전이다.

나) 피고는 2020. 9.말경 퇴사할 예정으로 퇴직금으로 75,305,215원을 요구하여 주주가수금 변제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던 것이다. 퇴직금 채권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한다.

다) 피고는 2020. 10. 26. 위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63,732,940원을 납부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또한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다.

라) 피고는 2020. 10. 20. 위 2억 5,000만 원으로 D이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E은행 대출금 45,033,135원을 변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20. 9. 30.을 기준으로 300,825,690원의 철강대금 미수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 48,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고 이와 별도로 47,000,000원의 어음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 채권을 양도받아 2020. 10.경 43,612,657원, 2020. 11.경 44,638,362원, 2020. 12. 11. 3,960,341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및 어음금 채권이 제1금원지급행위일인 2020. 8. 20.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3,614,330원[=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300,825,690원 + 부도 어음 채권 48,000,000원 + 어음 미수금 채권 47,000,000원} - {원고가 변제받은 43,612,657원 + 44,638,362원 + 3,960,341원}]의 물품대금 채권 및 어음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20년에 2020. 2. 10. 1,000만 원, 2020. 2. 21. 3,000만 원, 2020. 4. 20. 4,000만 원, 2020. 6. 8. 6,000만 원, 2020. 6. 20. 2,000만 원, 2020. 7. 30. 2회에 걸쳐 1억 원, 2020. 8. 10. 2회에 걸쳐 7,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2020. 3. 3. 4,000만 원, 2020. 5. 6.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20. 6.경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었으므로,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제1금원지급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인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과 물품대금 연체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D(지분율 55%), 피고(지분율 30%), D과 피고의 아들 G(지분율 15%)로 이루어진 가족회사로, 경영에 있어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2, 3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0. 9. 28.과 2020. 9. 29.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 중도연말정산대금이 집중적으로 출금되어 그 무렵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회사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10. 6. 3,600만 원, 1,040만 원, 2020. 10. 8. 195만 원, 62만 원 합계 48,970,000원이 '부가세'라는 적요로 지급되었고, 피고의 위 계좌에서 2020. 10. 26. 63,732,940원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어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약 76%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제2, 3금원지급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D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D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D과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D 개인대출금과 이 사건 회사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D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주주가수금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산사태 이후 행정기관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피고가 주주가수금 대여 및 변제 내역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D과 피고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2020. 8. 20.자, 2020. 9. 28.자는 모두, 2020. 9. 29.자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의 잔존채권액인 133,614,330원(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03,614,330원 - 제1금원지급행위 70,000,000원 - 제2금원지급행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61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영, 판사 최리니, 판사 김은수

1) 피고는 2022. 3. 3.자 준비서면 5면에서 258,071,29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다음 가) 내지 라)

금액을 모두 더하면 254,071,290원이다.